

# (재)카이스트 발전재단 위촉행정원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

## 1 모집분야 및 인원

직종	직명	모집분야	모집구분	인원
행정직	위촉행정원	일반행정 회계보조	신입/경력 무관	1명

※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.

## 2 모집분야 직무내용

모집분야	주요업무
카이스트 발전재단 일반행정	- 일반행정, 회계보조, 기타 사무지원 - 타 지역 장기출장(지방 장기출장이 가능한 자, 짧은 장거리 운전이 가능한 자)

※자세한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(별첨) 참고

## 3 지원자격

구분	주요내용
지원자격	- 운전면허증 소지자
결격사유	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-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-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되는 자 -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- 비위면직 취업제한 대상자 - 2019. 9 .1. 이후 KAIST와 최초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난지 않은 자

## 4 근무조건 및 근무지

구분	주요내용
고용형태	기간제
근무형태	전일제 (주5일, 9시~18시)
계약기간	수습기간 3개월 계약 수습평가 통과 시 9개월 추가 계약 * 근무업적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가능
급여	카이스트 발전재단 기준에 따름
근무지	한국과학기술원 본원 내 카이스트 발전재단
근무부서	카이스트 발전재단
임용예정일	2021.08.02.(예정)

## 5 지원방법 및 기간

구분	주요내용
지원방법	본 공고와 함께 게시된 지정양식을 작성 및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- 접수 이메일: <a href="mailto:isangdae@kaist.ac.kr">isangdae@kaist.ac.kr</a> (채용담당자 이메일) (※ 지정양식 외 별도양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및 자필서명이 누락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.)
접수기간	- 2021.06.28. ~ 2021.07.18.

## 6 채용일정 및 합격자 처리기준

### 가. 채용전형 일정

구분	평가방식	합격배수	일정	비고
서류전형	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 평가	3배수 이내	7.21(수)	
면접전형		1배수	7.26(월)	
결격사유 검증*	채용후보자 대상 결격사유 확인	-	7월 말	
임용	신규임용	-	8.2(월)	

\* 면접전형 합격자(채용후보자)를 대상으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과 임용 결격사유를 검증

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이 불가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
- 임용 결격사유 검증 결과,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.

\*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.

## 나. 합격자 처리기준

구분	처리기준
합격자 처리기준	평가위원 평균점수 고득점순 (※ 각 전형별 만점의 1/2 미만을 득점하는 경우 불합격)
동점자 처리기준	(서류전형)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 시 모두 면접전형 기회 부여 (면접전형) 관련 규정에 따라 ①취업지원대상자 ②특기자 ③지역인재 ④장애인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.

## 7 전형단계별 제출서류

### 가.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

제출서류	제출시기	제출방법
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외 지정양식	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	채용담당자 이메일 제출

### 나. 결격사유 검증

- 제출대상자: 면접전형 합격자(채용후보자)
- 제출방법: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
- 증빙자료는 합격 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
- 모든 증빙서류는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.
-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,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

#### 1)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

제출서류	목적
- 교육사항 증빙자료	응시원서
- 경험·경력사항 <sup>1)</sup> 증빙자료	기재내용 진위확인
-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(보훈대상자) <sup>2)</sup>	
-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	자기소개서 기재내용 진위확인

- 1) 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, 4대보험 중 1개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, 소득금액 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.
- 2)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제출처를 카이스트 발전재단으로 발급받아 제출

#### 2) 임용 결격사유 검증

제출서류	목적
- 후견 부존재등기부등본	임용 결격사유 검증

제출서류	목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인신용정보조회서</li> <li>-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</li> <li>- 채용신체검사서 (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서로 발급)</li> <li>- 병적증명서(해당자)</li> <li>- 성범죄경력조회서</li> <li>- 운전면허증</li> </ul>	

## 8 이의신청

구분	주요내용
신청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</li> </ul>
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</li> <li>-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해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 (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)</li> </ul>
처리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(외부 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(※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.)</li> </ul>

## 9 유의사항

- KAIST 기간제근로자 퇴직 후 재임용 제한 규정 관련, KAIST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 상 경력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,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기재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취소를 할 수 있음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, 누락, 지원자격 미충족 및 연락불능,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.
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류 제출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.
-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, 편견유발 항목\*을 기재할 경우 감점 처리함.

\* 편견 유발 16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1) 편견 유발 6대 항목: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교명, 성별, 생년월일(연령), 사진
- 2) 편견 유발 10대 항목: 결혼, 재산, 취미(특기), 종교, 신장(체중), 학력, 전공, 학점, 외국어, 추천인  
\* 예시: 출신학교를 추측할 수 있는 학교이메일, 학교기숙사 주소, 학교동아리명, 출신학교 유명인 선배 등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함. 누나, 오빠, 형, 아들, 딸(기혼), 아내 등의 단어를 피하도록 함.

-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 및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(증빙서류 검토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정보 포함)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.

- 전형일정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지원자들에게 개별 통보함.
- 채용 관련 부정행위 처벌사항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취소, 채용취소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채용취소자의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함.

1. 타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2.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자
3. 소정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등 응시자격 부적격자
4.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자
5. 청탁·압력·뇌물 등을 통한 채용비리 당사자 또는 연루자
6. 부정합격자\*

\*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

- 비위면직 취업제한 대상자의 경우 합격취소 · 채용취소

####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
- 채용학정자(면접전형 합격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)의 채용취소, 임용불응,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채용예비후보자(면접전형 예비합격 차순위자)를 선정할 수 있으며, 기관 필요 시 최대 1년 이내에 채용을 할 수 있음.
  -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\* 재직여부를 확인하며, 파악된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함.
- \*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·외가 4촌 이내
-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연락처: 카이스트 빌전재단(isangdae@kaist.ac.kr)